



#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보험업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일괄면제규정(BER)이 2017년 3월 31일 일몰과 함께 폐기될 예정임. EU는 보험업 공동행위도 다른 산업과 같이 경쟁촉진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쟁법의 틀 안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보험업법상의 근거인 상호협정 운영에 있어 EU에서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호협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되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럽연합(EU)에서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하 ‘일괄면제규정’<sup>1)</sup>)이 2017년 3월 31일부로 일몰되어 폐기될 예정임.

- 일괄면제규정의 폐기 후 모든 보험업 공동행위는 EU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쟁제한 공동행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음.
- 본고는 EU의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일괄면제규정이 제정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및 적용제외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EU 실행조약 제101조<sup>2)</sup>(이전 EC 조약 제81조와 동일)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적용을 면제하는 조건을 담고 있음.

- 제1항과 제2항에서 유럽 공동시장 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들 간의 협정, 협회의 의사결정 및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제3항에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1)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2)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1) Article 101.

편의의 상당부분을 소비자가 갖는 경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sup>3)</sup>

■ EU는 보험업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이후 검토와 개정을 통해 적용면제 대상 공동행위 범위는 점차 축소하여 왔음.

- 1992년 EC 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 제3932/92호가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1993년 4월 1일부터 일부 보험업 공동행위에 경쟁법의 적용이 면제됨.<sup>4)</sup>
  - 통계의 공동 집계 및 위험보험료 산정, 비구속적 표준약관의 제정,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 안전장치 인가 등 4개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함.
- EC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일괄면제규정 운영에 관한 검토 보고서<sup>5)</sup>를 제출하면서 경쟁법 적용면제의 범위를 통계의 공동집적과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으로 축소하도록 권고함.
- 그리고 지난 2016년 검토 보고서<sup>6)</sup>에서는 특정 보험업 공동행위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경쟁법 적용의 틀 안에서 충분히 공동행위 사안별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림.

■ EU의 일괄면제규정 폐지와 같이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경쟁법 적용제외의 축소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왔음.

- 일본의 경우도 199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지진 등과 같은 손해보험 특정위험의 공동인수로 한정만 바 있음.
- 우리나라도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1996년 OECD 가입 이후 1999년 개정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근거가 되는 보험회사 상호협정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나 보험회사 법규리스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공동행위<sup>7)</sup>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8

3) 즉, 경쟁제한성보다 경쟁촉진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함.

4) 2003년 3월 31일 일몰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10년 3월 31일 일몰되는 EC 위원회 규칙 358/2003으로 대체됨.

5) EU는 일괄면제규정에 일몰조항을 넣고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최소한 일몰 1년 전까지 경쟁법 적용제외의 현황 및 연장 필요성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제8조).

6) European Commission(2016. 3 .17),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Functioning of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7) 생명보험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과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2건, 손해보험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과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외에 공동인수보험계약의 대차청산 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해

조<sup>8)</sup>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sup>9)</sup>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적 금융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경쟁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 증가문제가 대두되어 왔음.<sup>10)</sup>
-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일괄면제규정 폐기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큼.<sup>11)</sup> **kiRi**

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협정 등 7건의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따라서 상호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됨.

- 8)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므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상호협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됨.
- 9)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10) 보험업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사례는 이승준·강민규·이해량(2014),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참조.
- 11)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 사건에서 보듯 보험회사 간 이자율 관련 정보교환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4년 대법원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됨. 그러나 담합혐의로 인하여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의 평판이 저하되고, 소송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법률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음(이승준(2014),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KiRi 리포트』, 제294호, 보험연구원).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상호협정의 급진적인 폐지는 보험회사에 유사한 법규리스크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